

학생들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최근 최순영 국회의원이 두발규제금지를 포함한 '학생인권법'을 발의했지만 이게 통과돼도 두발자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O교시폐지/강제보충수업 운동이 일어나자 교육부는 O교시금지지침을 내렸고 자율학습·보충수업을 할 때 희망원을 받도록 했지만, 이게 잘 안 지켜지고 있음은 누구나 압니다. 결국 학생들이 나서야 합니다. 권리는 자기 힘으로 얻어내는 것으로, 남이 선심 쓰듯 준 권리는 다시 뺏길 수도 있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교육3주체 중 교사에겐 교권이 있고 학부모에겐 친권이 있고, 정치·경제적 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학교별로 두발을 협상하라는 교육부지침은 기만적인 책임회피이며 학생들을 학교별로 분열시키려는 술책입니다. 학생들에겐 정의와 쪽수가 있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인권과 헌법이 우리 편입니다. 그리고 그 정의를 위한 우리의 현실적 힘은 바로 학생들의 행동 자체입니다. 대만 청소년들은 인터넷서명 10만 명 모으고, 두 차례 시위로 완전한 두발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뭉쳐야 하며, 당당하게 나서야 합니다. 학생들이 발 벗고 나서면 두발자유는 꼭 이루어집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ASUNARO]와 함께 해주세요



아수나로는 5.14두발자유집회 및 지역 행사를 주최했으며, 청소년인권포럼 개최, 신문<청소년의 눈으로>발간 등을 해왔습니다. 아수나로에 오면 청소년인권토론회 / 시위·집회·캠페인 등의 행사 / 소책자 쓰기나 청소년인권이론연구 / 훈련과 친목을 위한 MT / 청소년인권신문발행 같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아수나로는 청소년의 인권, 교육문제 등에 대해 고민하는 청소년·비청소년이 모인 단체로 청소년도 엄연히 권리를 지닌 주체임을 주장하며, 청소년을 억압하는 다양한 문제와 그 원인 해결, 청소년들의 주체적 조직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cafe.naver.com/asunaro



**우리는 왜
두발자유를
주장하는가?**

청소년 두발자유 거리집회

자세한 내용은 cafe.naver.com/asunaro를 참고하세요



coming soon

두발규제는 헌법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설정포고

자유민주주의와 그 가치를 명문화한 헌법은, 사적 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발규제를 하려면 “두발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 또는 “학교가 두발규제 없이는 절대 유지되지 않는다.”를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머리칼을 어떻게 하든 그것이 타인의 권리를 해치진 않습니다. 오히려 두발규제는 “신체의 자유”(헌법제12조①항)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헌법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제37조②항)라는 조항도 있습니다.

이 기본권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 할 수 없습니다.(제37조②항)

그러나 두발규제가 실질적 국가안보나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고 법률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헌법에는 누구도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 단 조항도 있습니다.(제11조①항)

이는 우리가 ‘학생’ 이란 신분에 의해 부당하게 차별 받아서는 안 됨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두발규제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구별·관리편의 위해 두발제한한다는 망발

설정포고

학생과 어른의 구분을 위해 학생들의 두발을 규제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은 신분구별을 위해 특정 신분에게 신체의 자유를 포기할 것을 사회가 요구하는 것으로 ‘사회적 감시망의 효율성’을 ‘인간의 존엄성’ 보다 높은 가치로 여기는 반인륜적 발상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은 신분증 확인만 제대로 해도 해결될 것입니다.

두발규제의 근거로 “학생의 머리가 길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학생의 두발자유 = 탈선”이라는 논리는 학생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겠다는 말이며, 명백한 사회적 폭력입니다. “너희가 머리가 길면 탈선할 수 있으니까” 라며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 별다른 합리적 근거도 없이 기본권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악법도 법이다? 악법이 있다면 고쳐라!

현재 학칙은 학생들(구성원)을 배제하고 학교장과 교사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합니다. 또 이미 있는 학칙이라도 헌법에 위배되면 ‘불법’입니다. 형식적 법치를 부정하고 실질적 법치를 지지하는 것은 교과서도 인정한 정설입니다. 모든 법과 규칙들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해지며, 학칙도 위헌인 경우 당연히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그것을 따르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라며 규제가 싫으면 학교를 떠나라고도 합니다. 이는 두발규제가 옳지 못해도 강행할 테니 싫은 사람은 나가란 것이며, 결국 “두발규제를 위해서라면 공교육을 포기하겠다.”라는 말입니다. 학교는 결코 학생들의 인권을 탄압하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육에서 ‘규제를 통한 억압’에 더 가치를 둔다면, 이는 과거 군사정권시절 교육을 군사문화로 물들였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입니다.

신체의 자유는 다수결로 제한할 수 없다.

설정포고

깡패들에게 돈을 뺏기던 아이들이 참다못해 깡패들에게 대들었습니다. “돈이 너무 뺏어간다. 하루에 만 원 이상 못 준다!” 두발규제에 저항해 일어서놓고는 어느 정도 타협을 볼지 생각하는 두발자율화(재조정/완화)가 꼭 이 꼴입니다. 두발자유는 머리 몇 cm 더 기르려는 구걸이 아니라 권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눈치 보면 완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존엄을 흥정하는 것입니다. 두발문제는 헌법을 수호하느냐 아니면 개박살내느냐입니다.

“몇 센티 완화하자.”는 결국 “나는 일단 이 정도로 만족하니 너희도 여기서 타협하자.”라는 소리로, 자기 기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전 규제가 스포츠형이었을 경우 그 머리에 만족하는 학생이 다른 학생들에게 완화하지 말자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발문제는 민주적으로 재조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머리칼은 남과 협의할 필요가 없는 사적영역입니다. 민주적으로, 혹은 다수결로 재조정하자는 말은 결국 개인의 자유에 대한 과잉협의입니다.